

한·중 수출보험제도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ort Insurance System in Korea and China

김미정(Mie-Jung Kim)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요약 및 결론 |
| II. 수출보험의 특성 및 선행연구 개관 | 참고문헌 |
| III. 한·중 수출보험제도 및 특성 비교 | Abstract |
| IV. 한·중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Abstract

Various export supporting systems of Korean government have affected Korean economy to be 13th in the world and over US\$ seven hundred trillion in terms of the volume. Especially, export insurance system use to cover the commercial risks of Korean exporter. That is why Korean exporter have been able to do their best in exporting and expand overseas market actively. On the other hand, China who use to drive strong export expansion policy after joining WTO, have also very focused on export insurance system and developed its applicable items.

From the point of view above, It is very meaningful study to compare the export insurance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suggested that government funds for export insurance should be raised to give exporters more benefits. New kinds of export insurance items, also, should be developed to actively fac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hange.

Key Words : Export insurance, Korean export insurance system, Chinese export insurance system

I. 서론

한국의 경제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9,570억 달러로 비교대상 18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물론 2004년 세계 11위에 비하면 세계10위권에서 멀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의 각 경제주체들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무역현장에서의 수출주도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각 경제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에 수출이 3,254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왕복 무역규모는 7,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수출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 것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 때문이었으며, 또한 수출지원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는 물품인도과정에서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업적 손해보험인 적화보험내지 운송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대규모성, 보험사고발생율의 예측불가능으로 인한 일반적인 통계원칙 즉 대수 법칙의 적용가능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서의 비영리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제도는 무역에서 수출업자에게 리스크 커버와 신용수단의 제공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 수출지원의 기능을 잘 수행하였다. 수출주도형 대외 지향적 정책을 경제개발전략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국제통상적 입지의 특이성과 WTO체제하에서 무역질서 또는 무역환경에 비추어 수출보험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수출업자가 적극적으로 수출시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본다.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은 20세기에 들어서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출무역에 관한 거래상의 신용관계를 담보로 하여 부보하고 수출신용보험 또는 수출신용보증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특혜금융 등의 직접적인 정부재정지원을 꾸준히 실행해 왔으나, WTO출범이후 직접지원의 형태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수출업자들의 활용률이 낮아 수출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수출보험제도의 전담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운영으로 1990년대 수출보험인수 실적 및 수출보험의 활용률은 이전에 비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WTO 가입과 급격한 성장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이 활성화 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의 최대무역교역국으로써 성장하였다. 중국은 2004년 4월 제10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함)을 통과하였는바 동무역법 제53조에

“국가는 수출입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관세환급 및 기타 대외무역촉진방식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수출신용보험은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정책적 기능과 업무가 중국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¹⁾

이렇듯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이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어지며 많은 수출업자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보험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중국의 제품과 경쟁을 이루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아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에 있어서 특성을 비교하여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서 장점이 있다면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수출기업에 지원하고, 향후 중국의 수출보험제도를 연구하는 후속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 기존의 논문 및 자료와 중국의 수출보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한·중간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수출보험의 특성 및 선행연구 개관

1. 수출보험의 특성 및 운영제도

1) 수출 보험의 특성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한다. 즉 수출자 또는 선적 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 및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 보험기관이 담보하기 어려운 수출 대상국의 비상위험과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을 정부 출자로 설립된 공적 신용기관을 통하여 담보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제도이다.

1) 수출보험공사, “중국수출신용보험제도 법제정 근거 마련”, 中國消息, 2005. (<http://www.keic.or.kr/>)

수출보험은 수출증대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 보험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보험과는 운영적 측면에서 다르다. 즉 일반적인 특성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특성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II-1> 참조).

<표 II-1> 수출보험의 특성

수출보험의 특성	일반적 특성	법률적 특성
	① 정부 책임 하에 운영 ② 제도의 유용성 ③ 독립채산의 원칙 ④ 담보범위의 포괄성	① 수출계약법을 법원으로 삼음 ② 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이익 한정

자료 : 김지용, “貿易環境變化와 輸出保險의 役割增進에 관한 研究”, 『國際貿易研究』, Vol.20 No.2, 1999, p14.

운영체제에 있어 국가별로 수출보험의 필요성 및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현실적으로 독립기관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고의 동시 다발성, 대규모성, 보험사고의 예측곤란 등 수출보험의 특성상 적정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둘째, 전쟁 내란 및 환거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보험사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보험자의 담보력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

셋째,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수입자가 존재하는 소재지역)의 경제조사 등이 필수적이나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입수하거나 수집하여 통합·조정하기는 어렵다.

민간주도의 기관이 수출보험을 운영한다면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성이 있는 위험의 유형만을 운영하게 되므로 담보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출지원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²⁾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가 수출보험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수출무역 및 대외거래의 진흥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제도상 담보하는 위험의 한계는 유동적인 성격을 갖으며 수출보험은 수출화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거래 수출품의 생산이나 자금의 융통 등에서부터 대금회수 투자에 대한 과실금 회수까지의 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커버하는 폭넓은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보험을 대외거래에 따른 위험을 담보해 줌으로서 수출시장개척 및 수

2)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eic.or.kr/index.jsp>), 수출보험제도와 정부주도 운영사유.

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그 기능은 수출진흥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 거래상의 불안 제거 기능, 금융 보완적 기능,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 이외에도 국민경제의 소득과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여타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⁴⁾

2) 수출보험의 운영제도

수출보험이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신용장방식의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대금미회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수출보험지원 형태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증보험 종목과 수출신용보험 종목 및 해외사업 자금대부 종목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별도로 보증제도와 대출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수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지원 형태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공산품 수출국이 아니고 항공기와 같은 첨단제품의 대형프로젝트와 같은 서비스 수출이 대부분이므로 미국의 수출상대국에 대한 수출위험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미국은 수출보험제도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보증제도와 대출제도를 통한 직접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의 보증제도는 수출상품의 제조와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의 공급을 촉진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지원제도로, 운전자본보증제도와 구매자신용보증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출제도는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직접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수출지원 수단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⁵⁾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는 1950년에 창설된 보통수출보험에서 시작 되었으며, 이러한 수출보험은 1987년에 선불수입 등을 보험대상에 추가하면서 무역보험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일본의 무역제도는 2001년 4월부터 수출보험의 전담기관인 NEXI(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일본무역보험)가 발족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보험은 산업별 수출 조합과 업무가 잘 연계가 되어 있어 조합별 포괄 보험을 가입하여 수출업자들은 조합을 통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편리하게 수출보험을 가입 할 수 있고, NEXI 측에서도 조합이 기본적인 보험 사무를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⁶⁾

3) 수출보험공사 홈 페이지, (<http://www.keic.or.kr/index.jsp>), 수출보험제도 개요.

4) 김지용, "貿易環境變化와 輸出保險의 役割增進에 관한 研究", 『國際貿易研究』, Vol.20 No.2, 1999, pp.433~446.

5) 이수일, "한·미·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 Vol.6 No.2,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p.65~84.

캐나다의 수출보험 운영기관은 1944년 설립된 수출신용보험공사(Export Credits Insurance Corporation : ECIC)가 1969년 Export Development Act에 의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설립된 공적 기관이며, 정부 계정만으로 이루어 졌던 수출금융을 EDC자체 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일부 제한적인 국익사업의 경우에 정부계정으로 금융지원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지원 수단이다.⁷⁾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제도의 시행은 1969년부터 시행되었다. 1969년 2월 18일 수출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면서 그 운영업무만 대한재보험 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공포 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으며, 대한재보험 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 대행체제를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⁸⁾되었다.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어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또한 수출업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수출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2. 선행연구 개관

우선 수출보험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진근(1989)⁹⁾은 수출보험 인수액이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이용률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품수출관련 수출보험의 이용률 결정요인으로 환율, 수출상품구조(중화학공업제품 수출/경공업제품 수출), 수출시장구조(G7에 대한 수출), 총통화(M2)의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보험종목별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인수액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출보험 이용률과 수출보험 인수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 영향력이 수출보험 이용률이 경상수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홍주(1995)¹⁰⁾는 수출보험가입자 특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수출보험가입자들이 가입하는 동기와 태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홍보가설, 보험료비용가설, 절세가설, 파산비용가설 등 4가지 기업보험수요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파산비용가설만이 기각되지 않았다. 즉 자본금이 적을수록, 이윤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낮을수록 보험가입을 희망하고, 거래국가의 위험이 많을수록 수출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희국(1998)¹¹⁾은 수출보험이 수출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계량분석을 한 논문이다. 분석방법은 벡터자기회기모형(VAR : Vector Autoregressive Model)에 의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6) 이서영, "일본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Vol.8 No.1, 한국관세학회, 2007, pp.283-301.

7) 김지용(1996), 전계서.

8)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eic.or.kr/>), 수출보험제도 개요.

9) 박진근,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 통권 41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89, pp.53-72

10) 정홍주, "수출보험 가입자 연구와 활성화 방안", 「무역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5, pp.53-72

11)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수출보험」, 통권 92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 pp.2-13

(Variance Decomposition)를 사용하였다. VAR 모형은 거시경제 시계열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다변량 시계열모형이다. 분석 자료는 1987년~1997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해 분석한 결과 수출보험이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5%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은재(2003)¹²⁾는 수출보험 및 수출어음보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1970년~1998년까지, 중장기수출보험은 1972년~1998년까지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수출수요함수에 수출보험인수액(수출보험금액), 수출어음보험금액, 중장기수출보험을 등을 각각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각 변수에 대해 자연대수를 취한 후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전체적으로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수출어음보험제도는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수출보험제도는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억헌, 이수일(2003)¹³⁾은 수출보험이 한국과 일본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1980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일본 각국의 수출액, 수출상대가격, 수출상대국에, 수출보험인수액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에 관계되는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수출보험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외국에서 연구되었던 수출보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szagh and Greene(1982)¹⁴⁾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그들은 수출품목, 수출경험, 매출액, 수출액에 대한 총생산액의 비율 등이 수출보험에 대한 수출업자의 태도와 관련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수출액과 총매출액의 비율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수출업체들이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출보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¹⁵⁾ 또한 Huszagh and Greene(1985)¹⁶⁾은 연구를 확대하여 수출신용사고경험과 동 보험제도에 대한 태도를 관찰하였다. 수출보험 가입자들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사고경험이 많고 또 수출보험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있음을 알아냈다. Funatsu(1986)¹⁷⁾의 연구는 수출보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형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최대기대효용이론을 근거로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모델과 활용하지 않는 모델로 구분하여 수리적으로 분석하였고, 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의 수출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12)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산성논집」, 제17권 제2호 통권35호, 2003, p.59~82.

13) 김억헌, 이수일, "한·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국제상학회, 2003, pp173~190.

14) Hus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FCIA : Help or Hindrance to Expor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49, 1982, pp.256~268.

15) 불만의 내용에는 보수적(제한적, 관료적, 융통성 없는) 운영방식, 서비스의 지체 등이 포함된다.

16) Hus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How Exporters view credit risk and FCIA Insurance the Georgia Experie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2, 1985, pp.117~132.

17) Funatsu Hideki, "Expe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3, 1986, pp.679~691.

또한 Eeckhoudt and Louberge(1986)¹⁸⁾는 Funatsu의 연구를 발전시켜, 수출을 보험이 없는 수출(*export without insurance*), 비례보험에 의한 수출(*insurance with proportional reimbursement*), 비비례보험(*insurance with non-proportional reimbursement*)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이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들을 비비례보험의 경우에는 Funatsu의 연구에서와 같이 보험요율의 조정을 통하여 위험을 중화 내지 전가시킬 수 있으나, 비례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Ⅲ. 한·중 수출보험제도 및 특성 비교

1. 한·중 수출보험제도 비교

1) 한국의 수출보험 운영제도¹⁹⁾

수출보험이 최근들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신용장방식의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대금회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제도의 시행은 1969년부터 시행되었다. 1969년 2월 18일 수출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면서 그 운영업무만 대한재보험 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 공포된 후 25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 총 8차례의 법 개정을 겪었고 또한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 대행체제를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²⁰⁾되어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또한 수출업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수출보험의 운영종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Ⅲ-1> 참조).

18) Louis Eeckhoudt nad Henri Louberge, "Expert Credit Insurance : Commen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5, 1986, p 742~750. Vol.55, 1986, pp 742~750.

19)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dknation>.

20) 수출보험공사(<http://www.keic.or.kr/>) 수출보험제도 개요

<표 III-1> 수출보험 운영 종목

보험의 종류		보험의 목적	보험 계약자	담보위험	보험금액
단기 수출 보험	개별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 수출 거래,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수 출 업 자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선적전:수출계약액의 90%(중소기업은95%) 이내 선적후:수출계약액의 90%(중소기업은 95%)
	포괄보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 수출거래, 위탁가공무역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금회수 불능 위험	수출계약액의 90% (중소기업은 95%)
농수산물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농수산물 수출거래	수 출 업 자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불능 위험 수출물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수출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	선적전 : 수출계약금액의 95% 이내 선적후: 수출물품 대금의95% 가격상승위험: 수출계약금액의 40%
수출 어음 보험	개별보험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결제기간 2년 이내인 화환어음	외국 환은 행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화환어음의 부도 및 재매입은행의 소구에 의한 상환	어음금액의 90% (중소기업은 95%)
	포괄보험	결제기간 360일 이내인 무신용장 및 기한부 신용장 조건의 화환어음			
중장기 수출 보험	공급자 신용	개별보험	수 출 업 자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수출불능 또는대금회수불능위험	선적전: (수출계약금액-선수금)의 90%(중소기업은 95%)이내 선적후:수출대금의 90%(중소기업은 95%) 이내
		포괄보험	금 융 기 간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금회수 불능위험	선적전: 90% 선적후: 90%
	구매자 신용	개별보험	금 융 기 간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금회수 불능위험	대출원리금의 90% 이내
		포괄보험			직접대출에 한함
시장개척보험		무역전시회 참가계획	수 출 업 자	무역전시회 참가비용 회수불능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예산액×50% (중소기업은 60%)이내

해외투자보험	“주식 등”보험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해외투자	비상위험(수용위험·전쟁위험·송금위험)으로 인한 투자원금 및 과실금 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회수불능	해외투자액(이자 또는 예상배당액 포함)또는 보증채무부담액의 90%(중소기업은 95%)범위내
	“사채 등”보험	경영지배인의 사채 취득 합작투자시 외국의 합작파트너에의 출자용 자금의 장기대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보험	해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성비에 관한 권리, 과업권, 공업소유권 등의 취득	보증채무자		
	“보증채무” 보험	현지법인의 장기차입금, 합작투자자의 주식취득 또는 출자용 장기차입금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			
해외공사보험		해외건설촉진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해외 공사 계약	해외건설업자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불능 위험 또는 확인대가 및 지출비용의 회수불능위험	수출불능 위험: 해외공사 계약금액에 포함 한 수출물품대금×90% (중소기업은 95%)이내 회수불능 위험: 공사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대가×90% (중소기업은 90%)이내
		해외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이에 대한 권리		배상위험으로 인한 장비에 관한 권리 등의 취득대가, 또는 권리 등의 상실취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	장비에 관한 권리 등의 취득대가×90%(중소기업은 90%)이내
수출보증보험	개별보험	수출계약이나 해외공사계약에 관련된 B-Bond, AP-bond, M-Bond, R-bond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이 주계약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	보증금액의 90%
	포괄보험	해외공사 및 해외엔지니어링 활동계약에 관련된 B-Bond, AP-bond, M-Bond, R-bond			보증금액의 70%
수출신용보증		중소기업 수출업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	중소기업수출업자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공여한 대출을 만기에 사환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증금액의 100%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http://www.keic.or.kr>), 2007.3.20.

2) 중국의 수출보험 운영제도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의 운영종목을 살펴보면, 크게 단기수출신용보험, 중장기수출신용보험, 투자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수출신용보험에는 종합보험, 총괄보험, 신용장 보험, 특정구매자보험, 구매자 위약보험이 있으며, 중장기수출신용보험에는 특정계약보험, 수입업자대출보험, 수출업자신용보험 등이 있다. 또한 투자보험은 국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투자관련 위험의 문의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해외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다. 각 제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할 수 있다(<표Ⅲ-2>참조).

<표 Ⅲ-2> 중국 수출보험 운영 종목(21)

보험의 종류		보험의 목적	담보위험	보험 금액
단기 수출 신용 보험	신용장 지불방 식	1년 이내의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취소 불능 화환신용장 및 D/P 방식의 거래에 사용.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신용위험: 손해액의 최고90%까 지 보장. 비상위험: 손해액의 최고 80% 까지 보장.
	비신용 장지불 방식			
	총괄보험	비신용장방식을 사용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지급인도조건(D/P), 인수도 조건(D/A), 외상매매(O/A) 방식의 거래에 사용.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신용장 보험	지불 방식으로 수출할 때에 직면한 송금 위험에 대해 보증하며, 취소불능 화환 신용장(L/C)방식의 거래에 사용.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특정구매자 보험	중국 수출 기업을 위한 보험. 수입자가 대금 지급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D/P, D/A, OA 등), 보험금액의 보상 비율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지급인도조건(D/P), 인수도 조건(D/A), 외상매매(O/A)등의 거래에 사용.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신용위험; 고객이 보상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 비상위험: 고객이 보상비율을 자유롭게 선택.
구매자위약 보험	중국 수출 기업을 위한 보험 전자제품, 플랜트 수출, 대외 공정 도급, 노무 협력 등에 적합.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특정계약보 험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보험. 비교적 큰 금액의 수출(200만 달러이상)에 적합, 전자제품과 플랜트 수출 등에 사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	신용위험: 고객이 보상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	

21)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www.sinosure.com.cn), 產品與服務.

		용되며 지급인도조건(D/P), 인수도 조건(D/A), 외상매매(O/A)등의 거래에 적합. 보험금액의 보상 비율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험.	비상위험: 고객이 보상비율을 자유롭게 선택.
증장기수출신용보험	수입업자 대출보험	중국의 수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 경쟁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 특히 하이테크놀러지,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과 플랜트 등 자본성 화물의 수출 및 해외 공정도급 항목 등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구가 수출 무역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제공. 대금 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거액의 손해를 회피. 대출은행에게 대출금상환위험보장의 한 종류로 정책성 보험을 제공.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이자 대금지급의 지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보험증명서 명세표>의 비즈니스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
	수출업자 신용보험	중국의 수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 경쟁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 특히 하이테크놀러지,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과 플랜트 등 자본성 화물의 수출 및 해외 공정도급 항목 등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구가 수출 무역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제공. 대금 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거액의 손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성 보험.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이자 대금지급의 지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위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보험증명서 명세표>의 비즈니스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
	투자보험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하거나 상업보험기구에 권한을 부여하고 증장기 정치보험위협과 관련된 투자위협 문의 서비스를 제공. 외국자본활동을 지지하며 협동하여 운영하면서 위협보장을 제공하고 규정한 손실을 배상하여 지원, 격려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	-	-

자료 :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產品與服務, (<http://www.sinosure.com.cn/sinosure/cpyfw/default.html>)

2. 한중 수출 보험제도의 특성 비교

1) 수출 보험제도의 운영주체 및 운영형태

세계의 수출보험제도를 살펴보면 그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시장 특성에 따라 정부 부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정부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약 43개 국가에서 정부기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III-3> 참조).

〈표 III-3〉 수출보험제도 운영형태

운영 형태	국 가	국가수	기관수(중복)
정부부처	영국, 사이프러스, 러시아	3	3
정부기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중국, 대만, 헝가리, 홍콩 등	45	47
민간대행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13	16
총계		58(순계)	66
- 민간 대행인 경우에도 정부가 최종책임을 부담.			

자료 : 수출보험공사, 세계의 수출보험제도, (<http://www.keic.or.kr/index.jsp>),

정부가 수출보험제도를 주도하여 운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 성격상 민간제공이 곤란하다. 수입국의 외환위기, 전쟁 등 담보에 따른 수출보험상품의 위험성격상 민간에서 취급이 곤란하므로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비교적 위험이 적은 OECD 국가에 대한 수출거래에 한해서만 민간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WTO 체제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수출 지원수단이며,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수지 Cycle이 진입초기에는 민간 재정으로 운영하기에는 불가피하다. 연도별 수지보다는 장기적 수지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적정 수준의 이윤창출이 요구되는 민간 기업은 운영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²²⁾

특히 중국의 경우 대외무역은 철저한 국가 관리제도로 되어있다. 국가의 대외무역관리수단은 입법, 행정 및 경제적 방법이 이용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채택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제도로는 수출입 관리제도, 수출입상품검사와 수출입화물통관 및 관세제도가 있다. 대외무역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은 199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세칙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누구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외무역권한을 부여받은 경제 주체(원칙적으로 국영 또는 집체기업)만이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기타의 어떠한 경제조직이나 개인도 대외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무역공사(貿易公司)외에 독립기업들도 무역권한을 부여받아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다. 즉 생산과 수출입을 겸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가공 및 보상무역기업 등 일부 사영기업도 대외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²³⁾

22) 수출보험공사, 세계의 수출보험제도, (<http://www.keic.or.kr/index.jsp>)

23) 中國保險監督委員會, (<http://www.circ.gov.cn/Portal0/default63.htm>)

(2) 한·중 수출입 보험제도 특성 비교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특징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의 수출보험제도는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비하여 종류가 적은바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비교를 하도록 하겠다(<표Ⅲ-4> 참조).

<표Ⅲ-4> 한·중 수출입 보험제도 특성 비교

구분	한 국			구분	중 국			
	보험종류	보험목적	보험금액		보험종류	보험목적	보험금액	
단기수출보험	개별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 수출 거래, 위탁가공 무역, 증계무역, 재판매거래	선적전:수출계약액의 90%(중소기업은 95%) 선적후:수출계약액의 90%(중소기업은 95%)	단기수출 신용보험	종합보험	신용장 방식 비신용장 방식	1년 이내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및 D/P 방식의 거래에 사용.	신용위험: 손해액의 최고
	포괄보험				총괄보험		비신용장 방식을 사용.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D/P, D/A, O/A 거래에 사용.	90%까지 보장. 비상위험: 손해액의 최고 80%까지 보장.
					신용장보험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해 보증하며, 취소불능화환 신용장방식의 거래에 사용.	
					특정구매자보험		중국 수출 기업을 위한 보험. 보험금액의 보상 비율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가능. D/P, D/A, O/A 등의 거래에 사용	신용위험; 고객이 보상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
					구매자위약보험		전자제품, 플랜트 수출, 대외 공경도급, 노무 등에 적합.	비상위험: 고객이 보상비율을 자유롭게 선택.
					특정계약보험		비교적 큰 금액의 수출(200만 달러 이상) 전자제품과 플랜트 수출 등에	

						사용. D/P, D/A, O/A 등의 거래에 적합.		
중장기 수출보험	공급자 신용	개별보험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선적전: (수출계약금액-선수금)의 90% (중소기업은 95%) 이내 선적후: 수출대금의 90% (중소기업은 95%) 이내	중장기 수출신용보험	수입업자대출보험	하이텍,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과 플랜트 등 자본성 화물의 수출 및 해외 공정 도급 항목 등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구가 수출 무역을 위해서 신용 대출을 제공. 대금 회수 위험을 보장 대출은행에게 대출금 상환 위험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보험증명서 명세표>의 비즈니스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
		포괄보험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 거, 산업설비, 선박 등 포괄보험 특약서에 정한 수출 품목.	선적전: 90% 선적후: 90%				
	구매자 신용	개별보험	직접대출(Direct Loan) 및 전대자금(Relenting Facility)	대출원리금의 90% 이내	수출업자신용보험	하이텍,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과 플랜트 등 자본성 화물의 수출 및 해외 공정 도급 항목 등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구가 수출 무역을 위해서 신용 대출을 제공. 대금 회수 위험을 보장 하는 정책성 보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보험증명서 명세표>의 비즈니스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	
		포괄보험	직접대출에 한함	대출원리금의 90%				
해외투자보험	“주식 등”보험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해외투자액 (이자 또는 예상 배당액 포함) 또는 보증채무부담액의 90% (중소기업은 95%) 범위내	투자보험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하거나 상업보험기구에 권한을 부여하고 중장기 정치보험위험과 관련된 투자위험 문의 서비스를 제공. 외국자본활동을 지지하며 협동하여 운영하면서 위험보장을 제공하고 규정한 손실을 배상하여 지원, 격려하여 중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			
	“사채 등”보험	경영지배인의 사채 취득 합작투자시 외국의 합작파트너에의 자용 자금의 장기대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보험	해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자산에 관한						

	권리, 과업권, 공업소유권등의 취득			
“보증 채무” 보험	현지법인의 장기차입금, 합작투자자의 주식취득 또는 출자용 장기차입금에 대한 보증 채무 부담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에 대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보험제도는 한국처럼 많은 종류의 보험제도가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아직까지 수출신용보험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완비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보험의 선택범위가 적어서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중국 보험제도 피해보상 범위가 한정 되어 있으며, 한국에 비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손해배상비율)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중국 수출업자들의 수출 피해 보상에 대한 불안감이 증식되어 수출을 장려하는 중국의 정책에 타격을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단기수출신용보험 중 특정 구매자 보험, 구매자 위약보험, 수입업자 대출보험은 계약자의 임의 선택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해보상에 대한 임의선택권이 없으나, 중국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 범위에 맞추어 계약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출업자를 장려하는 정책성 제도의 일환으로 해석 될 수 있다.

IV. 한·중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중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1)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수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활용종목이 편중되어 있다. 현재 수출보험제도가 지원하는 보험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에서도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수출보험종목 가운데서도 보험인수 비중 면에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IV-1> 참조).

〈표 IV-1〉 종목별 수출보험 인수 실적

(단위: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4월
단기수출보험	38,749.488	49,946.057	53,785.405	60,692.776	65,240.038	27,602.187
수출어음보험	372	-	-	-	-	-
농수산물수출보험	6.636	6.794	7.487	13.773	13.142	4.953
시장개척보험	-	-	106	-	-	-
증장기수출보험	1,212.203	898.311	1,977.510	2,617.169	4,804.259	3,166.655
해외공사보험	225.454	31.497	440.801	237.342	872.984	118.772
해외투자보험	80.151	80.546	64.643	131.726	481.717	941.988
수출보증보험	485.406	1,491.943	999.810	1,324.670	1,734.358	1,225.262
이자율변동보험	3.048	341.339	266.870	-	4.575	-
환변동보험	7,197.655	6,977.265	2,360.618	16,270.860	16,979.345	7,121.861
시장개척보험	-	-	-	-	-	-
수출신용보증	1,782.055	1,540.291	1,428.273	1,315.381	1,159.061	367.083
위탁판매수출보험	-	-	-	-	-	-
일반수출보험	-	-	-	-	-	-

자료 :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eic.or.kr/index.jsp>), 「수출보험지」, 2008.05~06.

이와 같이 활용종목의 편중성은 결국 수출보험제도가 다양한 국민경제의 대외활동유형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제도의 경제적 기능이 그의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담보위험이 편중되어 있다. 상품수출관련 수출보험종목들이 담보하는 위험성을 선적 전 위험과 선적 후 위험으로 분류할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품수출관련 보험종목 중 선적 전 위험을 담보하는 종목인 일반 수출보험 및 수출금융보험 등 2개 종목의 보험인수 비중은 지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간의 수출보험운용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선적 후 위험담보행위로 이루어져 왔음을 뜻한다. 담보위험의 이러한 편중성은 곧 수출보험제도기반의 취약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수출보험제도에 부여된 경제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선적 전 위험과 선적 후 위험의 담보비율이 50대 50%의 균형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일본의 경우 선적 전 위험의 담보가 일반수출 보험 중 비상위험 포괄보험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선적 전 위험담보=비상위험담보=포괄인수”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경우 선적 후 담보위험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용위험의 담보에 치중되어 있고 비상위험의 담보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럽의 국가들 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보험은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수출어음보험의 경우도 철강제품, 기계류 및 타이어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관련 인수액 비중이 증대됨으로써 주로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보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높는데 이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투자자가 주로 비상위험발생 가능성이 적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해외투자보험의 인수는 건당 투자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대개도국 제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보험이 정책보험이므로 당초 수출보험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그 동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수출위험담보위주로 활용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은 별다른 제도적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더욱 심화되어 수출보험의 정책적 지원기능이 국내 기업부문간 불균형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수출지원금융제도와 상충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지원수단으로써의 수출금융은 수출 신용장이 내도된 후 동 신용장에 의한 수출물자의 생산집하를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행 수출금융은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물론 D/A, D/P 등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 원자재 수입자금, 국산 원자재 생산 및 판매자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수출금융은 수출금융규정 제9조에서 수출지원금융의 수혜자에 대한 제약을 두어 금융기관의 담보확보를 강화하였으며, 금융수혜자(생산 및 수출자)는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비용은 담보부담에 대한 추가비용을 간주하였는데, 이는 수출보험부보에 따른 비용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외경쟁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수출보험종목의 이용률이 편중되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보험은 상품관련 수출보험으로 출발한 것이 세계 수출보험의 역사이며 그 동안 수출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의 경우 상품수출과 직결된 수출보험종목들의 활용이 수출보험전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종목 중 상품의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종목(<표IV-1> 참조)은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신용보험 등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96%수준을 보여 다른 종목의 수출보험 활용에 비하여 너무 편중되어 있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수출관련 보험인수비중이 적고 불안정한 경우 위험의 효과적인 분산과 대형사고의 방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여섯째, 기금담보력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기금의 규모는 유효계약고에 비하여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규모나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수출보험기금만으로는 다양한 대외경제에 수반되는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보험사고를 원

만하게 처리할 수 없다. 수출보험사고는 수출보험종목과 수출보험계약에 따라 엄청나게 큰 경우도 있으며 또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대형 수출보험사고나 동적 다발성의 수출보험사고가 발생될 경우 수출보험기금은 바닥을 드러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출보험기금의 확보는 수출보험자의 담보능력의 강화와 공신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포괄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될 경우 수출보험자의 보험책임액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수출보험기금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수출보험 운영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그 대부분인 운용기금의 절대·상대적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운영보험의 소극성이다. 이상에서 지적된 주요문제점들 중 보험운영자의 보수적 보험운영을 초래하는 문제점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그간의 수출보험보상 및 보험금 회수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수출보험이 도입된 1969년부터 1992년 6월말까지의 보상 실적면에서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212.5%를 기록함으로써 1980~1988년 중 일본의 23%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인수에 있어서 수출보험제도의 정책적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사고액의 회수면에도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역사가 일본 및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짧은 면이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및 그의 운영이 보다 적극적인 인수, 보상 및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 갖는 중요한 문제점인 것이며, 주어진 제도하에서의 정책적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용 자금결제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중국의 수출보험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WTO가입 후 2001년 12월 18일에 정책성 신용업무기구인 중국수출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공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기구는 신용 위험 또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파산, 이자 대금지급의 지연, 지급의 거절,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등의 위험을 회피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중국의 수출보험제도는 기간이 짧고 명확한 수출보험제도의 근거가 없다. 중국은 1988년부터 수출신용보험을 사용하여 왔지만 이 보험을 전담하는 기관은 2001년 12월 18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그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으며 수출보험을 담당하는 법 규범은 중국 인민 공화국 보험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사고의 특수 요인을 커버해 줄

24) 이홍무,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17권, Vol.1, 1999, p.225~251.

25) 閻奕榮, “中國出口信用保險分析及國際比較”, 2007 .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수출보험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고, 각기 다른 기구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및 투자보험은 창립할 당시부터 일반 업무는 중국인민보험사가 담당하였으며,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의 책임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이런 위험관리의 정부기관 간 책임분담은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유에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출보험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수출기업들은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에 대하여 항상 노출이 되어있다. 수출신용보험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급방식에 있어서 신용위험을 낮추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가들(일본 39%, 프랑스21%, 독일18%)에 비해 약 12% 정도의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⁶⁾. 전체적으로 수출신용보험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출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인식을 심어 주지 못하여, 기업들 역시 수출 신용 보험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수출신용보험회사의 신용조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중국의 수출기업체 역시 파트너인 기업의 신용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출기업은 수입자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으며, 수출신용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많은 사건·사고 피해가 발생한다.

다섯째, 수출보험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수출보험 상품의 종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적으며, 변화하는 수출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국의 수출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출시장개척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여섯째, 수출보험에 대해 중국정부 역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정부는 수출장려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 중국은 수출 신용 보험의 정책성에 대해 충분히 지지 하지 않으며, 보다 유동성 있는 요율산정을 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요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므로 기업들이 수출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기업들의 수출발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보험제도의 개선책

수출보험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수출업자들의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자의 직접적인 위험의 커버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자신있게 수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의 효율적인 확충이나 활용의 적극적인 제고를 위하여 신규종목을 개발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26) 산업자원부, 『2002년 산업자원백서』, 2002.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운영기금의 효율적인 확충이다. 수출보험기금을 바탕으로 담보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으나 현재 기금조성이 정부에 의해서만 출연되어지고 있다. 사실 현재 어떤 사기업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은 해야겠지만 기금의 출연을 여러 곳으로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정보를 통해 해당지역 수출업체들을 위한 수출보험 기금을 마련케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선진화된 기관은 자신의 의사를 기초로 하므로 차츰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방식도 현재의 정부의 자의에 의존하지 말고 법률로 전년도의 인수실적 혹은 보상실적에 연계하여 기금 조성액을 정하여서 타 기관에 자의를 막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수출보험공사에서 영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영리사업으로는 수출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인 신용조사정보를 가공 판매할 수도 있고, 현재 정부수익사업으로 되어있는 로또 복권과 같이 수출보험복권의 발행 등 여타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을 기금에 전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보험종목의 개발이다. 활용종목이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에 편중된다는 것은(<표IV-1>참조) 수출보험종목들이 성격상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단기수출보험이나 우리의 주요품목인 선박, 기계류 등의 중공업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활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종목에 대한 편중성이란 결국 수출보험제도가 다양한 국민경제의 대외활동유형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보험제도의 경제적 기능의 차원에서 볼 때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일부종목에 국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종목의 담보위험을 추가하거나 신규 보험종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수출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으로는 후자의 경우로서 신규 보험종목의 등장으로 인한 다양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환변동보험이나 이자율변동보험의 추가 개정은 환경 상황에 맞게 도입된 종목이며, 이러한 신규종목의 도입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활용종목의 편중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수출위험관리와 신용조사의 체계적 구축사업이다. 수출보험의 기금이 열악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손해율(<표IV-1>참조)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손실액을 살펴보면 1998년에 비해 2001년도에는 2배가 넘는 343%를 차지하였다(<표IV-2>참조). 이로 인한 열악한 기금으로 수출보험 인수시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이나 위험 발생률이 높은 국가와는 거래를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수출보험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활용률을 저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수출보험제도의 기본 목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에 유효한 수출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 중국 무역에 관한 수출보험제도를 공격적으로 운영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수출보험법의 제도측면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수출보험제도 운영의 탄력성 부족, 운영기금확충, 수출보험운영상의 일부 불명확한 법적근거에 관한 문제와 운영관리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급변하는 중국 무역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러한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중보험을 연구·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보험의 대상인 상품에 있어서 서비스상품과 무형상품의 수출 및 플랜트수출과 금융상품의 수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수출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수출보험 제도 활용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오히려 대기업이 참여율면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자금력이나 대외경제 활동에 있어서 직면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위험의 정도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종목이나 수출보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율 확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영기금의 절대·상대적 영세성은 보험운영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기금의 확대를 위한 재원의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 과제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 확대가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정부재원으로서 수출보험을 통해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 부문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출보험 제도는 WTO체제하에서도 용인되는 수출지원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기업위험 등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수출전략이 요구된다.

비록 중국의 수출보험의 역사는 길지 않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범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고, 중국의 보완점 및 장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한국의 기업과 중국의 기업이 세계의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여 경쟁하게 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중국에 비해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보험제도를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경쟁의 우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중국의 보험제도와 한국의 보험 제도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아직은 미비하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수출보험이라는 분야에서도 분명히 빠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수출보험의 선진국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는 일본,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 장려정책의 일환인 수출보험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안정적인 대중국 수출신장을 꾀하기 위하여 보험 제도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국내의 무역환경이나 산업구조에 맞는 수출보험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효원,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억현, 이수일, “한·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국제상학회」, 2003.
- 김지용, “貿易環境變化와 輸出保險의 役割增進에 관한 研究”, 「國際貿易研究 (International trade review)」, Vol.20 No.2, 1999.
-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수출보험」, 통권 92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
- 박진근,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 통권 41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89.
- 박현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Vol.24 No.2, 한국무역학회, 1999.
- 이정호, “수출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중장기수출보험제도와 해외투자보험제도를 중심으로”, 「韓國經商論叢」, Vol.14 No.2, 한국경상학회, 1996.
- 이서영, “일본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Vol.8 No.1, 한국관세학회, 2007.
- 이수일, “한·미·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 Vol.6 No.2,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 전창원, 『무역보험실무』, 일신사, 1994.
- 정홍주, “수출보험 가입자 연구와 활성화 방안”, 「무역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5.
- 윤 호,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논총」, 통권 11호, 2003.
- 이봉상,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수출보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서영,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시환,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2001.
-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산성논집」, 제17권 제2호 통권35호, 2003.
- 이춘삼·최봉혁, 『신무역실무론』, 박영사, 2001.
- 이흥무,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17권, 1999.

최정호·이제현,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經營學研究』 Vol.31 No.2, 한국경영학회, 2002.

산업자원부, 『2002년 산업자원백서』, 200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청, 2003.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 매뉴얼』, 2003.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업무현황』, 2003.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2004.

한국수출보험공사, 『제도 해설서』, 2008.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 선진국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1998.

Hus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How Exporters view credit risk and FCIA Insurance the Georgia Experie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2, 1985.

Hus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FCIA : Help or Hindrance it Expor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49, 1982.

Funatsu Hideki, “Expe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3, 1986.

Louis Eeckhoudt nad Henri Louberge, “Expert Credit Insurance : Commen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5, 1986.

Berne Union, 『Berne Union Yearbook』, 2004.

ECGD, 『Report of the comparsion of expert credit agency』, 2004.

Louis Eeckhoudt nad Henri Louberge, “Expert Credit Insurance : Comment”,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5, 1986.

閔奕榮, 『中國出口信用保險分析及國際比較』, 2007.

陳有軍, “出口信用保險若干法律問題研究” 鄭州大學 碩士論文, 2007.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http://www.sinosure.com.cn/>)

中國保險監督委員會 (<http://www.circ.gov.cn/>)